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573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:김기덕, 권영희, 김경우, 김기대, 김정태, 김정환, 봉양순, 서윤기, 송명화, 송정빈, 오현정, 유정희, 이광성, 이태성, 장인홍 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○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상공 인의 경제 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 창 근거 마련(안 제13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표창)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 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 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	제13조의2(표창) 시장은 소상공인
		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
		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
		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
		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「서
		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
		표창할 수 있다.